

최근의 언론보도 피해양상과 구제현황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보도를 둘러싼 분쟁과 법적 소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역대 소송은 다반사가 되었다.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고,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해 실형선고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 등에게 사건 알선 소개비 등을 지급하고, 자신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건의 부당한 특혜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도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기자 4명에게 실형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다.¹⁾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과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를 상대로 모두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비방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는 이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대상으로 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고, 소위 “양길승 사건”과 관련해 문화일보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였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동아일보는 “보도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청와대의 소송이 “언론보도에 대한 압박의 성격이 짙다”고 사실을 통해 주장했다.²⁾ 중앙일보는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자유를 내세웠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권력자의 의혹에 대해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는 고도의 언론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과도한 소송을 통해 언론에 압박을 가하고, 언론의 비판기능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이 나라의 언론자유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항변했다.³⁾

현행 법 체제 하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는 언론중재위원회와 같은 피해구제기구를 이용하거나 직접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이용할 경우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는 대신 신속하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받아낼 수 있다. 소송을 통해서도 사전금지청구,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청구 등을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다.⁴⁾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늘어난 것은 19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였다.⁵⁾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면서 언론자유와 인격권간의 충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잦아진 것이다. 법원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판결하면서 상충하는 두 가지 법익, 즉 언론자유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부당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의 형성에서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 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 또한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⁶⁾

대법원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나, 명예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개인권도 또한 보장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권리들이 서로 상충될 때 그 해결은 어떠한 권리가 사회정의와 복지의 실현에 공헌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했다.⁷⁾

그러나 법원은 언론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법 제 310조에 규정된 소위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왔다. 무리한 법적 소송으로 인해 물론 언론의 비판, 감시, 고발 기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써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증거가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거가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⁸⁾

언론피해 관련 소송 추세

일제치하와 군사정권 하에서는 부정부패를 질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언론본연의 기능이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덕분에 언론보도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기사로 인해 개인의 신용과 명예가 깃밟히고 사생활을 유린당해도 감히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시절이었다. 언론이 권력 그 자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은 해방 이후 1980년까지 총 8건, 1981년부터 1987년까지 5건에 불과했다. 한편 5공정권은 언론기본법에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적극 활용되지는 못했다. 5공 기간동안 언론중재건수는 전국적으로 한해 평균 40-50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이 물러나면서 양상이 바뀌었다. 명예훼손 소송 건수는, 1988년부터 1996년까지 32, 1997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60건으로 급증했다.⁹⁾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되는 사건 수 역시 크게 늘어났다.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언론의 횡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권력과 언론간의 역학관계가 바뀐 탓도 있었다. 과거와 같은 언론의 통제나 협조가 어려워지면서, 권력집단 역시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한편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군사정권시절 익숙해진 무책임한 보도관행을 버리지 못한 채, 미확인 보도를 남발, 소송을 자초하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명예훼손 소송 건수는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언론중재위 중재신청 건수는 연 600건 내외로 머물고 있다.

표1.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관련 판례 (1990.1.1~2000.12.31)

출처, 한국언론재단,<언론소송 10년의 판례연구>, 2001년, p.132.

	민사소송	형사소송	헌법재판소	합계
1990	12	1	-	13
1991	9	1	2	11
1992	15	5	-	20
1993	15	14	-	29
1994	17	9	-	26
1995	26	3	-	29
1996	40	3	3	46
1997	24	2	1	27
1998	43	-	1	44
1999	19	-	3	32
2000	10	-	-	10
합계	239	38	10	287

표2.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신청 건수 및 유형 (1981. 3. 31. ~ 2003. 6. 30)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연도	신청건수	명예 및 사생활침해	신용훼손	기타
1981	44	23	15	6
1982	50	41	9	
1983	71	58	13	
1984	54	39	12	3
1985	59	44	15	
1986	49	25	24	
1987	47	39	8	
1988	55	36	19	
1989	121	87	34	
1990	159	136	23	
1991	220	192	28	
1992	381	313	68	
1993	423	307	114	2
1994	541	421	118	2
1995	528	443	73	12
1996	556	428	105	23
1997	490	466	17	7
1998	602	577	19	6
1999	641	619	9	13
2000	607	581	12	14
2001	659	643	9	7
2002	511	493	10	8
2003	314	294	4	16
계	7,182	6,305	758	119
	(100.0%)	(87.8%)	(10.6%)	(1.7%)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

1) 최근의 명예훼손 소송 사례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들은 주로 유명인, 공직자나 언론사들이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근년에는 검사 등 사법 공직자의 명예훼손 승소사례가 크게 늘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2002년 국회 법사위 대검 국감에서 "검사들의 언론사 상대 소송은 1999년 5건, 2000년 1건, 2001년 5건 등 총 11건에 이른다"며 "소송을 제기한 검사 수는 91명으로 전체 검사의 8%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1백13억5천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¹⁰⁾

표 3. 검찰에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사례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 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중재위 결과	출처
2002.10.25	김태정 전검찰총장	조선일보	'이용호 게이트' 관련	10억	서울지법	3천만원 배상	중재불성립	2001가합58240
2002.10.10	김○○검사 외 20명	MBC 서○○	이종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 관련	11억	서울고법	1억원배상	-	2001나42662
2002.02.07	서울지검 검사 10인	한겨레	검찰의 소속직원 수뢰혐의 사건 관련	22억	서울고법	원고패소	-	2000나31320
2001.10.27	검사 20명 (대검찰청)	조선일보	검사와 정치권 유착의혹 관련	10억	서울지법		-	대한매일
2001.07.26	조영선 검사 (수원지검)	MBC 이용마	검찰수사 비판 관련	5억	서울고법	6천만원배상	-	2000나25745
2001.04.19	이훈규 검사 (서울지검) 외 11명	조선일보 정충현	검찰의 감청의혹 관련	3억	서울고법	2억4천만원배상	-	2000나9859
2000.07.12	군법무관	경향신문	병무비리 수사 관련		서울지법	2천5백만원배상	-	99가합90005

언론사들은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이 권력감시기능을 약화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가 수십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하자, 한겨레마저 사실을 통해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소송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언론사들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적극 명예훼손을 제기해왔다. 2001년 들어 소위 “언론개혁”을 둘러싸고, 보수언론과 진보언론간의 상호 비판 기사가 늘어나면서 부터였다.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2000년 이후 언론사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사례는 47건에 달했다.¹¹⁾

한편 법원은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서는 법적 송사보다는 상호비판의 관행을 통해 해결하라고 언론사들에게 주문했다. 서울지법은 중앙일보사가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의 명예훼손만을 인정하면서 “언론사간의 광범위한 상호비판은 언론의 부패를 막는 내재적인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언론사들의 자제를 당부했지만 언론사간의 명예훼손 소송은 줄어들지 않았다.¹²⁾

표4. 언론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사례

2000년, 7건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 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중재위결정
2000.12.28	동아일보	한겨레21	사주관련 보도	3억			미디어오늘	
2000.12.28	여수시청출입기 자 8명	오마이뉴스	주재기자 비판기사		여수경찰서		미디어오늘	
2000.11.23	동아	한겨레	언론특별 비판기사				미디어오늘	
2000.11.23.	조선	한겨레	언론특별 비판기사				미디어오늘	
2000.09.21	매일경제	김대호 (동아일보)	지역감정 관련 보도				미디어오늘	
2000.08.03	한국일보	월간말 한겨레 오연호기자	한국일보 장재국 회장의 불법도박 의혹보도			소취하	미디어오늘	
2000.01.06	조희준 (국민일보)	미디어오늘 언론노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국세청 고발 관련	190억	서울지법		미디어오늘	

2001년, 18건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 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중재위결정
2001.10.03	동아일보	박준영 국정홍보처장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서울지검		조선일보	
2001.09.27	동아일보 외	한겨레	지하철 1호선 건설시 노선관련	10억			조선일보	
2001.09.20	스포츠투데이	(안티사이트 운영자)이모씨	음란화의 일등공신등으로 묘사	7천 5백	서울지법	원고패소	동아일보	
2001.06.07	김영신/조현국 (KBS)	KBS노보 이용택 위원장외 3명	노보에 허위사실 적시	2억	서울지법		미디어 오늘	
2001.06.06	한겨레	심규철 의원 조선일보	심총해부 언론권력 시리즈 관련	30억	서울지법		대한매일	
2001.06.06	한겨레	월간조선 권영해	원고를 로동신문의 서울지국이라고 비하	20억			대한매일	
2001.05.03	조갑제 (월간조선)	월간 말 오연호 기자	원고가 안기부로부터 수고비 수수의혹	3억	서울지법	각각 2000만원 지급/원고일부 승소	미디어 오늘	
2001.04.19	중앙일보	대한매일	홍석현 사장의 탈세 보도	10억	서울지법	원고일부승소	미디어 오늘	
2001.04.19	MBC	월간조선 박관용 의원	문화방송 사장 임명 관련	4억			국민일보	
2001.04.07	조선일보	한겨레	심총해부 언론권력 기사에서 조선일보 비판	70억	서울지법		조선일보	
2001.04.01	한겨레	조선일보	정부와 언론의 유착의혹제기		서울지검		미디어 오늘	
2001.03.29	한겨레	월간조선 권영해 박일홍	출판물에 의한		서울지검		미디어 오늘	
2001.03.29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비판		서울지검		미디어 오늘	
2001.03.22	한겨레	박관용의원등 언론저지장악특 위 22명	정부와 언론의 유착의혹제기	50억	서울지법		미디어 오늘	
2001.03.17	동아일보	MBC	일방적인 비방보도	3억	서울지법		문화일보	
2001.03.17	한겨레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등 22명	정부와 언론의 유착의혹제기	50억	서울지법		문화일보	
2001.03.15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사주 상속 관련 보도		서울지검		미디어 오늘	
2001.01.03	동아일보	한겨레21	사옥매각 관련 보도	3억			중앙일보	중재불성립결정

2002년, 13건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 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중재위결정
2002.12.24	남성우 (KBS)	한국논단	원고를 주사파라고 비방한 글 게재		대법원	위자료 천만원 지급/원고 일부승소	2000다146 13	
2002.11.14	충청리뷰	청주지검장외 2명의 검사	의도적인 보복수사와 광고탄압	1억 5천	대검찰청		미디어 오늘	
2002.11.13	조선일보	한겨레	대북지원 보도 관련	1억	서울지법		한겨레	
2002.11.13	조선일보	시사저널	군 의문사 관련 보도	1억	서울지법		한겨레	
2002.10.31	조선일보	조선일보없는아 름다운세상	친일신문 유신독재의 나팔수로묘사		남대문경 찰서		미디어 오늘	
2002.10.11	KBS	MBC	뉴스투데이 보도내용 관련	1억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1 4741	정정보도결정후 피신청인의 이의신청
2002.09.13	조선일보	MBC	의문사 진상위원회 발표 관련보도	3억	서울지법		미디어 오늘	
2002.08.08	조선일보	한겨레	조선일보 비방기사 게재	4억	서울지법		미디어 오늘	
2002.07.25	MBC	월간조선	MBC를 국민에게 버림받을 뉴스로 묘사	배포금지 가처분	서울지법	원고패소	미디어 오늘	중재불성립결정
2002.05.22	CBS 광주방송	박태영 전남지사 경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에 원고의 명의를 도용		광주지검		대한매일	
2002.05.02	(전세계일보 회장) 이상희 외	세계일보 노조 조민성 외 2명	노조의 노보와 대자보 내용관련	2억		원고패소	미디어 오늘	
2002.04.11	동아일보	MBC	주식매입관련	3억원	서울지법	정정보도	미디어 오늘	중재불성립결정
2002.01.03	조선일보	MBC	안티조선 운동 관련 조선일보 비판보도	30억	서울지법		미디어 오늘	

2003년 7월 31일 기준, 9건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 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중재위결정
2003.07.16	10개 종합일간지 사진부장단외	MBC	항응을 받고 광고성 사진 게재			소송예정	미디어 오늘	
2003.06.10	조선일보	조아세 대표 와 일부 회원	조선일보 절독운동				조선일보	
2003.03.21	장명국 (내일신문)	월간말	노조결성 탄압	2억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61345	중재신청 취하
2003.03.13	남해신문	동아일보	김두관 행자부장관 관련	1억	서울지검		미디어 오늘	
2003.03.06	(스포츠조선) 노조	스포츠조선	현 위원장의 성추문설 사내공고			고소예정	미디어 오늘	
2003.03.05	조선일보	김주연 김종배	조선일보의 오보		서울지법	각각 징역6개월,10 월의 실형 선고	조선일보	
2003.02.14	KBS	조선일보	재해방송 미비 비판	2억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45626	중재불성립 결정
2003.01.09	우종창 (월간조선)	월간 말 오연호 기자 정지환 기자	원고를 변태성욕자인것처럼 표현	2억	서울고법	원고패소	2001나66484	
2003.01.01	조선일보	네티즌 홍재희씨 등 5명	인터넷게시판에 조선일보 비방		남대문경 찰서		미디어 오늘	

2) 명예훼손과 언론자유

사법부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의 피해자가 공인이거나 보도내용이 공적 관심사안이라면 명예를 훼손한다하더라도 언론자유를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판결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보도내용이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특히 형사처벌을 하려면 “비방할 목적”의 존재여부가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공인이나 공익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보다 언론자유를 존중해야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언론의 보도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인 경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과 달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¹³⁾

대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공인과 사인의 구별이 필요함도 인정했다. “공적인 존재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고 판결했다.¹⁴⁾ 또 언론보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¹⁵⁾

그러나 하급법원은 오히려 공인이기 때문에 명예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¹⁶⁾ 서울지법은 검사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판결에서 “검사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위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을 담당해야 할 검사들이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뿌리깊은 불신감을

심어 준 데 일조한 점,” “일반 독자들에게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그릇된 의혹을 안겨주어 검찰 구성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더욱 조장한 점” 등을 강조했다.¹⁷⁾

최근에 결정된 대전지법의 명예훼손 판결도 대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았다. 2003년 6월 20일 대전지법은 대전문화방송 기자들이 이종기 변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종기 변호사가 마치 대전 지역 판사 및 검사와 뒷거래를 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는 것이다.¹⁸⁾ 이종기 변호사는 법률사건 수임을 알선을 대가로 일부 대전지검 직원, 대전지역 경찰관들에게 64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대전지법은 “보도 내용 중 상당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할 것”이지만, 보도의 중심 내용, 즉 판검사가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기에 오보라고 판시했다. 허위보도를 했으므로 보도내용의 공공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문화방송 기자들이 “충분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하루 정도에 불과한 짧은 시간에 보도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을 인정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위법성 조각사유의 근거로 사용되던 “신속한 언론보도“가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것이다. 신속한 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사의 특성상 완벽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법원의 관례였다.¹⁹⁾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

1) 최근의 사생활 침해 소송 사례

언론보도가 개인의 사적 비밀을 대중에게 노출시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 307조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또한 민법 제764조에 따라 배상의 의무도 주어진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과 마찬가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가 규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²⁰⁾ 그러나 언론보도로 인해 사생활 침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진실여부는 규명할 필요없이 공익성 여부만 판단하게 된다. 즉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공익성이 입증되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 의한 사생활침해의 유형을 영미법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는 침입(intrusion)으로 언론이 취재를 하기위해 사적 공간에 허락없이 들어가 촬영하는 행위이다. 두 번째는 공표 (public disclosure)로 개인의 사적인 사항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오해를 낳는 공표 (false light)로 사실이긴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보도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다. 네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초상권을 도용 (appropriation)하는 행위이다.²¹⁾

한국에서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은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사례가 드물다. 한편 법원은 언론자유보다는 사생활보호를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주로 범죄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한 판례가 가장 많고,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면 혹은 음성을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손해배상하라는 약간의 판례가 존재한다.²²⁾ 범죄피의자의 초상권을 인정한 1998년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죄사건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범인이나 범죄혐의자에 관한 보도가 반드시 범죄 자체에 관한 보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하면서 언론매체가 범죄사실을 보도하면

서 범죄자의 신원을 명시하거나 초상을 보여주는 것은 초상권침해라고 판결했다.²³⁾

대법원은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²⁴⁾ 서울 고등법원은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생활 비밀보장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법익은 생명권, 인격권이 가장 우선한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알 권리 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더욱 보호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언론사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²⁵⁾

표 5.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 사례

일시	원고	피고	보도내용	배상요구액	법원	재판결과	출처
2002.12.16	권노갑	조선일보	원고의 모습을 승낙 없이 촬영 보도	30억 원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2가합13985
2001.12.16	박아무개	학원사외 2개언론사	범죄형의 내용 보도	1억1천만 원	서울지법	원고패소	2001가합25387
2001.1.11	모대학 음대교수	SBS	불법 과외교습 혐의로 체포장면 보도		서울고법	천만원 배상	99나66474
2000.10.11	함성욱	대한매일외 4개 언론사	O양 비디오 사건과 관련보도	4억4천만 원	서울지법	3천5백만 원 배상	99가합109817
2000.10.11	지용호	SBS	약속과 달리 원고의 신분 노출	5천만원	서울지법	7백만 원 배상	2000가합4673
2000.07.04	김명호	KBS	원고의 승낙 없이 방송프로그램을 복제해 배포	3천만 원	서울지법	2백만 원 배상	99나83698
2000. 03. 09.	손경한	SBS	원고의 승낙없이 전화통화 내용 방송	1억 4천만원	서울고법	5백만원 배상	99나43440

2000년 이후에도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법원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의 신원을 노출시킨 방송사에 대해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한 대학교수가 과외 교습을 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을 내보낸 방송사에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²⁶⁾ 또한 전화통화 내용을 승낙없이 녹음하고 이를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 “음성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²⁷⁾

2000년 서울지법은 소위 “O양의 비디오”에 등장한 남자가 대한매일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일부 기사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다며 총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언론사들은 “O양의 비디오”에 관한 보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고 또한 컴퓨터 통신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비디오에 대한 고발보도라며 공익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비록 “국민들로부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언론기관이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원고의 사생활과 초상을 원고의 동의도 받지 않고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²⁸⁾ 법원은 해당언론사의 일부 기사

에 비록 공익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사들을 읽는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과 성적 욕구의 대리만족, 이 사건 비디오 테이프에 대한 궁금증 고조 등에 기여하는 바가 훨씬 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²⁹⁾

서울지법은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체포된 법원 직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얼굴도 드러나게 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범죄보도에 있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비록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신상까지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범죄보도에 있어서는 그 보도내용이 어디까지나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경우에만 공익성이 있다 할 것이지, 피의자의 실명이나 신상과 같은 개인적인 사항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이를 밝히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어 지대한 정보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익성이 있다 할 수 없다.”³⁰⁾

최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관련 소위 “몰래 카메라” 화면 보도를 통해 공직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몰래 카메라,” 즉 취재대상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개인을 촬영해 대중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판결은 많지 않다. 그러나 법원은 비교적 “몰래 카메라”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왔다.³¹⁾ 1997년 서울지방법원은 음주운전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운전자를 몰래 촬영해 방송한 보도와 관련된 판결에서,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은밀한 촬영자체가 사생활 침해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³²⁾

법원은 은밀하게 촬영한 화면이라도 공익성이 입증되면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전 국회의원 권노갑씨가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조선일보는 2002년 3월 6일자에 권노갑씨가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살포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와 함께, 그가 측근들과 자택 거실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는 사진을 게재하였다. 권노갑씨는 조선일보가 허위기사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 촬영하여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원고가 그 측근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비록 그 장소가 자택 거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것이 원고의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치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을 받는 상태여서 그 측근과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했다.³³⁾

2) 사생활 침해와 언론의 자유

언론보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소송은 명예훼손 소송에 비해 적은 편이고, 언론자유와 논쟁을 크게 일으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다른 권리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사회질서 혹은 다른 권리와 충돌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완벽한 권리는 아닌 것이다. 개인의 소득이 사생활의 영역이지만 그가 얼마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의 소득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죄자를 잡기 위해 개인의 소지품을 뒤지거나 몸을 수색할 수도 있다. 또 공직자의 경우 그들의 공직 수행여부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해 진다. 그래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보장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어떻게 법적인 경계선을 긋는가가 중요하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구분할 명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법원은 사생활 비밀의 침해 여부를 판별하는 과정에서 첫째, 공개된 내용이 사적 영역의 것인지, 둘째, 개인의 동의 하에 사적 영역의 공개가 이루어졌는지, 셋째, 개인의 사적 영역이지만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인지를 고려해왔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과 사적 영역간의 구별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에서, 신속한 보도를 해야하는 언론은 합법과 위법의 경계선을 자기도 모르게 넘나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사생활의 비밀 공표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미국 법원은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뉴스가치가 있는(newsworthy) 정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거듭 판결해왔다. 공익성 여부를 아예 묻지 않는 것이다. 뉴스가치가 있는 사안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공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미국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었다.³⁴⁾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언론의 자유를 더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판결은 공공성을 위법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어 언론의 자유 보다 사생활 보호를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적행위나 공인에 대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일 경우 사생활의 비밀영역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사전 금지 청구

1) 사전방영금지 및 발행-배포 금지 가처분 사례

언론포해 구제 수단으로 1990년대 후반들어 자주 사용된 것이 방영금지 혹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사전 금지청구 제도이다. 민사소송법 제 714조에 따라 소송 당사간의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박을 방지”하기 위한 가처분절차에 따라 방영금지나 배포금지 결정을 법원이 내릴 수 있다.³⁵⁾ 비록 헌법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일단 보도가 행해지고 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인격권의 침해를 사후에 원상회복 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법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사전 방영금지나 배포금지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³⁶⁾ 대법원 역시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³⁷⁾

사전금지 청구는 인쇄매체보다는 방송매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에도 사전판매배포 금지 신청이 제기였다. 1996년 5월 한국광고주협회는 자신들이 실시한 “인쇄매체 수용자 조사”에 대한 <미디어 오늘>의 보도를 막기 위해 “신문기사 인쇄 배포 금지 등 가처분 명령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직 미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이를 공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신문은 비록 시사보도의 목적일지라도 저작물의 구체적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며 배포금지 명령을 내렸다.³⁸⁾ 1998년 11월 서울지법은 최장집 당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월간조선 11월호 발행-판매-배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장집 교수는 월간 조선이 자신의 논문에 대해 보도하면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판매 또는 배포를 할 수 없다며 배포금지를 명령했다.³⁹⁾

표 6. 방영금지가처분신청 사례

출처, 이승선,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와 언론자유 : 현실과 쟁점,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자료집,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년 6월 27일.

판결/결정일	방송일 (예정)	신청인	대상	프로그램	구체적아이템
서울지법남부 1994.3.18. 94카합90	향후	홍승연 (방송작가)	SBS	TV 드라마	“일과 사랑”
서울지법남부 1995.10.24. 95카합3860	향후	김광휘 (방송작가)	MBC	TV 드라마	“제4공화국”
서울지법남부 1997.8.27. 97카합4485 서울고법 1997.10.29. 97라169	향후	이병호 (변호사)	KBS MBC SBS	TV토론회	대통령선거후보초청 토론회개최
서울지법남부 1998.7.4. 98카합1639	1998.4.5.	김홍도 (목사)외	MBC 외	시사매거진 2580	길잃은목자, 금란교회김홍도목사
서울지법남부 1998.7.16.98카합3552	향후	김홍도 (목사)외	MBC	시사매거진 2580	길잃은목자 금란교회김홍도목사
서울지법남부 1998.12.1. 98카합6460	1998.12.1.	오동섭 (변호사) 21세기종합법률사무 소	MBC	PD수첩	변호사, 돈인가, 정의인가
서울지법남부 1999.3.9. 99카합640	1999.3.9.	김봉임 (교수)외	MBC	PD수첩	유전교수, 무전강사
서울지법남부 1999.3.16. 99카합451 서울고법 1999.5.20. 99라108	1999.3.20. (2.27예정)	김영중(국제크리스천 연합 신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구원의 문인가 타락의덧인가 JMS
서울지법 1999.4.6. 98카합6479 서울고법 1999.10.12. 99라130	향후	신커뮤니케이션코리 아 신상옥 (영화감독)	MBC	북한영화	사랑사랑내사랑 불가사리
서울지법남부 1999.5.11.99카합1131 서울고법 2000.4.20. 99나27783	1999.5.11.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	MBC	PD수첩	이단파문, 이재록목사
서울지법남부1999.6.3. 99카합1455	1999.6.3.	천부교전도관부흥협 회	MBC	다큐멘터리기획프로 그램 (정치,경제,사회,문화 조명)	한국100년,우리는 이렇게살았다- 2000년은없다, 혹세무민증말론
서울지법 1999.2.20. 98카합4070 서울고법 1999.5.27. 99라82 대법원 1999.8.25. 99마3397	1998.11.24	하정호 (종교가)	MBC 외	PD수첩	세계정교를아십니까
서울지법남부 1999.7.15.99카합1924	1999.7.15.	세계복음선교협회	KBS	추적60분	시한부증말론
서울지법남부 1999.8.3. 99카합1943	1999.8.10.	김수국 (사인)	MBC	PD수첩	고시에 인생(?)을 건다
서울지법남부 2000.2.11. 2000카합291	2000.2.12.	윤태식 (사업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살인미스터리-누가 수지감을 죽였나
서울지법남부 2000.6.9. 2000카합1423	2000.6.11.	학교법인대양학원	MBC	시사매거진2580	어떤 사학재단
서울지법남부 2000.7.4. 2000카합1689	2000.7.4.	학교법인한흥학원	MBC	PD수첩	사립학교바로세우기
서울지법남부 2001.5.11 2001카합1099	2001.5.11.	서울강남구청	SBS	SBS 뉴스추적	환락1번지 강남 뇌물커백션
서울지법남부 2001.7.28.2001카합1627	2001.7.28.	김기순(아가동산대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후5년
서울지법남부 2001.11.7. 2001카합1549	2001.7.15.	(주)그래미	MBC	시사매거진2580	숙취해소음료비교
서울지법남부 2001.11.9. 2001카합2445	2001.11.10	이임출외 (사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어느토요일밤의죽음 남겨진살인미스터리
서울지법남부 2002.2.14. 2002카합254	2002.2.14.	대순진리회외	MBC	PD수첩	도를 찾아떠난 아내
서울지법남부 2002.3.28. 2002카합370	향후	김수현 (작가)	MBC	TV 드라마	여우와 솜사탕
서울지법남부 2002.5.20. 2002카합926	2002.5.13. - 5.27.	이문옥(시장후보)외	KBS	TV토론프로그램	서울시장후보토론회
서울지법남부 2002.5.24. 2002카합959	2002.5.24. 2002.5.27.	이문옥(시장후보)외	SBS	TV토론프로그램	서울시장후보토론회
서울지법남부 2002.6.4. 2002카합1038	2002.6.5.	김창한(시장후보)외	MBC	TV토론프로그램	인천시장후보토론회
서울지법남부 2003.5.10. 2003카합1156	2003.5.10.	이정재 (사랑의보금자리 이사장)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자선의 그늘- 구산동 결핵환자촌 이야기

그러나 대부분의 사전금지 청구는 방송프로그램이 대상이었다. 1994년 이후부터 2003년 5월까지 방영금지가 처분 신청의 대상 프로그램은 27건으로, 주로 문화방송 <PD수첩>, <시사매거진2580>, 서울방송 <그것이 알

고싶다> 등의 시사고발 프로그램들이었다. 이중 10건에서 신청인의 요청이 수용되어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방영금지 되었다.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들은 주로 종교인, 교수, 변호사 등이었다.⁴⁰⁾

방영금지 가처분 결정에서 적용된 법적 기준은 장차 발생할 피해에 대한 엄격한 입증, 즉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의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와,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만을 인정하는 경우로 나뉘었다. 문화방송 <PD수첩>은 1999년 4월 만민중앙교회 담임목사가 여신도들과 성적관계를 맺어왔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하였으며, 신도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내용들을 방영할 예정이었다. 만민중앙교회의 사전방영금지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리의 이단성은 의견이고 도박사실 등은 사실적 증거가 있어 무방하지만, 성추문 부분은 객관적 입증이 없고 신청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

“이와 같은 사전금지는 비록 헌법상 금지되고 있는 검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명백한 때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하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서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침해행위의 태양, 가해자와 피해자 쌍방의 관계 및 사회적 지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⁴¹⁾

한편 서울지법은 국제크리스찬연합이라는 종교단체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대상으로 청구한 사전방영금지를 기각시켰다. 법원은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종교지도자가 그를 추종하는 여신도들과 집단적인 성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사회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진실성과 공익성을 인정해주었다. 특히 허락없이 촬영한 장면도 “그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언론의 자유에 손을 들어주었다. 방송내용이 진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피해자가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때에만 사전 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⁴²⁾

그러나 법원은 언론보도에 대한 피해의 입증보다는 언론보도내용의 진실 입증 여부를 사전금지의 기준을 채택하기도 했다. 2001년 7월 법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에 대해 방송금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대법원에까지 이르는 공판절차를 통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가동산의 성격에 관하여도 판단 받았고 당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아가동산의 성격 및 그 실체, 아가동산에서의 신청인의 지위가 세상에 상세히 알려졌다”며 “그 이후 공익적 요구를 충족할 새로운 사실 발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방송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방송금지 판결이유를 밝혔다.⁴³⁾ 법원은 방송내용이 공공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개인의 침해받는 인격권보다 “훨씬 강한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최근의 사례로는 2003년 4월 27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결핵 환자촌의 진실”편이 방영금지 결정을 받았다. 서울 지방법원 남부지원은 방송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영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취재 내용이 담긴 테잎 전부를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방송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일체의 처분을 해서도 안 된다고 결정했다.⁴⁴⁾

사전금지청구 제도의 문제점은 2000년 2월 방영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관련 방영금지 청구에서 잘 드러났다.⁴⁵⁾ 당시 법원은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남편 윤태식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내용이 방영될 경우 자신이 아내의 살인범으로 인식됨으로써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인격권의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편집초안을 볼 때 관계자들의 진술을 내세워 신청인

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간접적인 의도”가 엿보여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고, “몇 가지 정황 증거만으로 신청인을 살인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남편 윤씨의 혐의 부분이 삭제된 채 방송되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살인죄 공소시효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검찰에 의해 신청인 윤씨는 아내를 살해한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법원의 방영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언론인들은 사전검열과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헌법재판소가 언론에 대한 검열의 주체를 “행정권’만으로 한정시킨 것은 불합리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억제는 모두 사전검열이란 주장도 제기되었다.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사법의 이름을 빌린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인의 “소신과 양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위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법원의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면 언론자유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국민의 알권리 왜곡과 축소로 직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⁴⁶⁾ 또한 사전금지 제도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달리 일부 힘있는 집단이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수단으로 애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⁴⁷⁾

그러나 언론사들도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기도 했다. 문화방송은 월간조선 2002년 8월호에 실린 “버림받은 MBC뉴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유로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⁴⁸⁾ 그러나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은 “출판 등의 금지를 당하는 언론기관은 다른 구제수단이 별로 없음에 반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는 피해자는 사후에 반론보도, 손해배상, 정정보도 등으로 그 피해를 전보할 수 있고, 더욱이 신청인 자신도 공영방송사로서 피신청인 못지 않은 여론형성능력을 갖고 있어 자신에 대한 반론을 스스로 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가처분 절차를 통해 “출판이나 보도 등의 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거나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함이 아닌 것이 명백하며 또 신청인이 중대하고 현저한 회복 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다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문화방송 측에서 그러한 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판결했다.

2) 사전금지 청구와 언론자유

사전금지 청구제도에 대한 지지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보도가 행해진 후에 반론권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추락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금지 청구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⁴⁹⁾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전금지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전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판단기준이 사후구제 절차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고 사전금지청구의 특성을 감안한 “엄격한 책임주의” 법리가 적용되기도 한다.⁵⁰⁾ 사전 금지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부분 이러한 “엄격한 책임주의” 법리가 적용되었다⁵¹⁾. 반면 신청인의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면 방영을 금지시킨 경우는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적용된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신청인의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⁵²⁾

또한 공인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도 혼선을 보였다. 신청인의 신분이 종교지도자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두 사건에서, 한 판결은 “공인이라고 해도 일반인과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며 사전청구를 수용한 반면,⁵³⁾ 또다른 판결은 “공적 인물의 경우 통상인보다 더 많은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며 사전청구를 기각했다.⁵⁴⁾

미국 연방대법원의 경우, 1931년 Near V. Minnesota 판결에서 과거 저질, 선정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향후 신문제작 판매를 금지시킨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전검열이라고 판결했다. 예외적으로, 전시의 군사작전에 관한 정보나 무장봉기 선동, 음란외설물 등에는 사전억제가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거

의 없었다. 1971년 미국 국방부는 월남전 기밀문서를 폭로 보도한 뉴욕타임스에 대해 보도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사전금지를 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⁵⁵⁾

사전금지 청구제도가 설사 법적으로는 사전검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검열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의 사전금지 청구 수용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보도내용이 개인의 명예, 사회기본질서나 공공양속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보다는 언론보도로 인한 “중대하고도 현저히 회복곤란한 손해”의 입증책임을 금지청구자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취재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도 고려해 금지청구제도가 남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반론보도 청구권

1) 반론보도 청구사례

언론보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장치 중의 하나로 반론권이 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방송법은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을 두어, 언론에서 제기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⁵⁶⁾

언론중재제도는 반론권 보장을 통해 과실이나 고의 입증을 하지 않는 대신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보완하는 장치이다. 현행 정간법과 방송법상 보장된 반론보도 절차는 법적 소송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 우선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언론보도의 위법성 또는 언론사의 고의나 과실 등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 반론보도청구권은 명예훼손 소송과는 다르게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고 취재기자들의 고의나 과실 유무도 묻지 않는 것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언론보도가 있었다면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기관에 의하여 일반적인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은 피해자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도 적절한 방어의 수단이 주어져야 함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선언하면서 반론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⁵⁷⁾ 반론권은 거대 언론에 대한 견제 장치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이 거대한 언론의 전파력과 언론기관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리적인 언론기업의 막강한 위세와 편견에 의하여 부당히 침해되고 노출될 경우에는 개인의 권익을 신속·적절히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법원 역시 반론보도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객관적 제도”라고 옹호했다.⁵⁸⁾ 또 “반론보도청구권은 어떤 보도에 대한 정정이 아니라 그 보도에 의하여 사실상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의 반론이 있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그 반론을 보도함으로써, 시청자나 독자들로 하여금 원래의 보도 내용과 관련 당사자의 반론을 비교하여 공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을 도모”한다고 평가했다.⁵⁹⁾

현행 정기간행물 등록법과 통합방송법에 포함된 반론권 보장 조항은 5공 정권의 언론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언론기본법에서 유래된다.⁶⁰⁾ 그러나 제5공화국 정권치하에서 언론중재제도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물론 당시 언론이 철저히 반론권을 보장해,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신청할 사유가 없어서는 아니었다.

감히 언론을 상대로 불만을 제기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명예훼손 소송과 마찬가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건수도 1990년대 들어 꾸준히 늘어났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꺾였다.

이러한 추세는 크게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언론에서 반론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반론보도 신청을 할만한 사유가 줄어들었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언론중재제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론보도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자 일부 언론은 “언론중재위를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법정으로 가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동아일보도 “언론중재위 제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권을 얻어낼 수 있고 미흡할 때 소송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언론사가 제기한 47건의 명예훼손 소송 중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자주 지적되어 왔다. 우선 반론권 자체가 피해보상으로서의 성격이 약해, 곧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재위원회가 법정기구이기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론사가 합의를 거부했을 경우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보다는 언론사의 입장을 옹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있는 듯 없는 듯한 중재제도는 국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있었고 언론사들과는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다. 중재위원에 시민의 입장에 설만한 사람들 보다 언론사의 입장을 이해할 언론인 출신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⁶¹⁾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가 1996년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재신청인의 82.5%, 피신청인의 95.1%가 언론중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⁶²⁾

2) 반론권과 언론자유

반론권은 20세기 들어 소수의 거대 대중매체들이 언론을 독점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상황에서 여론독점과 조작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20세기 들어 대중매체가 널리 보급되면서 대중매체를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에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의 편차가 매우 크게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론권은 청구자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언론인들에게는 편집권의 독립을 위협한다. 따라서 반론권의 지나친 보장은 비록 언론에 대한 억압은 아니지만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반론권의 남용이 “현실적으로 정기간행물의 편집 내지 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됨은 물론 간접적으로 보도기관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영을 압박함으로써 보도의 자유에 대한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아직은 반론권 행사가 명예훼손이나 사전금지 청구 제도처럼 언론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주장은 제기되지 않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강제력이 없고, 법원에 반론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20년 이상 존재해온 언론중재제도를 통한 반론보도 제도가 한국언론의 다양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책임성을 얼마나 제고해 왔는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에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반론권의 법적 보장 여부가 언론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혁명 이후 난립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반론권과 정정보도 청구권이 생겼고, 독일의 경우는 히틀러의 대중선동정치의 폐해를 겪은 후 반론권을 보다 철저히 보장하는 법들이 생겼다.⁶³⁾ 반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반론권보다 편집권의 독립이 우선이라며 반론권이 언론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플로리다 주가 반론권 보장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반론권 보장과 같은 언론의 운

리는 바람직한 목표이긴 하지만 헌법상으로 언론윤리를 강요할 수 없고, 다른 많은 윤리적인 덕목과 마찬가지로 입법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⁶⁴⁾

한국의 반론권보장제도가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억 원에 이르는 명예훼손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누구도 쉽게 인정할 수 있지만 반론보도를 강제하는 것이 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설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명예훼손 소송으로 인한 많은 재정부담없이 사전단계에 효과적으로 피해자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한국적 현실에서 반론권의 법적 보장은 아직 필요한 것이다. 단 그 기준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편집권의 침해로 최소한으로 줄이고, 당사자에게는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입장주장의 기회를 주며, 국민의 알권리 신장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반론권조항은 사회적 강자를 위해 존재하는, 즉 기득권 세력자들의 여론주도권 다툼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접근이 용이한 사람일 수록 반론권을 강제하는 정도는 약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New York Times v. Sullivan사건에서 사실적 고의 (actual malice)기준을 공직자에게 적용하고 나중에 공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은 공직자나 공인은 일반인들과 달리 쉽게 미디어에 접근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한국법원에서 공직자나 언론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이들의 반론권 행사능력을 강조한 바있다.

또한 언론사가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는지 여부도 보다 세밀하게 따져야한다. 즉 명예훼손소송에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처럼,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노력을 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면 설사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나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언론이 반론권 보장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이를 취재원이 거부했다면, 보도가 나간 후에는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1) 대전지법 2003.6.20. 2002고단4563.
2) 동아일보, 2003년 8월 15일자.
3) 중앙일보, 2003년 8월 15일자.
4) 언론의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내지 309조에 따라 징역, 금고, 벌금 혹은 자격정지의 벌을 받게 된다. 명예훼손의 죄에 관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09조는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를 다루면서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764조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손해배상과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참조, 한국언론재단, <언론소송 10년의 판례 연구>, 2001년.
6) 헌법재판소 1991. 9. 16. (89헌마165).
7) 대법원 1988. 10. 11. (85다카29).
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6622).
9) 참조, 차용법,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한국언론학보>, 2001년 봄호, pp. 387-421.
10) 경향신문, 2002년 10월 1일자.
11) 사건 집계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국내언론관계판결집>과 한국언론재단의 뉴스검색 사이트인 <KINDS>, 그리고 언론관련 전문 주간지인 <미디어오늘>을 통해 수집한 결과이다.
12) 동아일보, 2001년 4월 12일자.
13)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3.1.24. 선고 2000다37647판결.
14)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524, 37531판결, 2002.12.24. 선고 2000다14613판결.
15)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899판결, 1995.11.10. 선고 94도1942판결, 1996.10.25. 선고 95도1473판결, 1998.10.9. 선고 97도158판결.
16) 대법원 1998. 5. 8. (97다34563).
17) 서울지방법원 2000. 6. 7. (99가합88873); 서울지방법원 2000. 2. 2. (99가합77460).
18) 대전지법 2003. 6. 20. 2002고단4563.
19) 서울고등법원은 판문점 총격공작사건의 배후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기사가 진실이라는 입증은 없다고 하더라도 “보도기관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를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언론사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2000. 8. 24. (99나11986).
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 3309 판결.

- 21) 황성기,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법적 문제,” <개인정보보호와 언론보도의 문제>, 2003년 7월 3일, 한국언론법학회;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년, pp. 105-136.
- 22) 서울지법 1995. 9. 27. 95가합3438, 서울고등법원 1997. 9. 30 97나14240,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97나43156, 대법원 1998. 9. 4. 96다11327,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 4. 2. 98가합16857, 서울지방법원 1999. 10. 22. 99나49001.
- 23)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 17257 판결.
- 24)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 25) 서울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
- 26) 서울지방법원 2000.10.11. 99가합109817; 세계일보 2001년 1월 6일자.
- 27) 서울고등법원 2000. 3. 9. 99나43440
- 28) 서울지법 2000.10.11.(99가합109817)
- 29) 서울지방법원 2000. 10. 11 (99가합109817)
- 30) 서울지법 2000.10.11. (200가합4673)
- 31) 서울지법 1997.9.3. 96가합82966.
- 32)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몰래 카메라의 사용에 대해 위법성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정정보도를 기각했다.
- 33) 서울지방법원 2002년 12. 6. (2002가합13985)
- 34) W. Wat Hopkins, ed. <Communication and the Law>, Vision Press, 2001, pp. 255-274.
- 35) 이재진, <한국 언론윤리법제의 현실과 쟁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년, pp. 209-242.
- 36) 헌법재판소 2001.8.30. 2000헌바36.
- 37) 대법원 1996.4.12. 93다40614, 40621.
- 38) 미디어 오늘, 1996년 5월 22일자.
- 39) 서울지법 1998.11.11. 98가합3441
- 40) 이승선,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와 언론자유: 현실과 쟁점,”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자료집,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년 6월 27일.
- 41) 서울고등법원 2000.4.20. 99나27783.
- 42) 서울지법 1999. 3. 16. 99가합 451.
- 43) 서울지법 2001.7.28. 2001가합1627.
- 44) 서울지법 2003.5.10. 2003가합1156.
- 45) 서울지법 2000.2.11. 2000가합291.
- 46) 2001년 9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47) 정길화, “방송금지가처분 제도의 극복을 위한 시론,” <방송금지가처분제도의 현실과 개선방향> 자료집,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년 6월 27일.
- 48) 서울지법 2002.7.26. 2002가합2193.
- 49) 안상운, “방송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 21세기언론연구소, <방송개혁>, 2001년 가을호, pp. 310-335.
- 50) 이승선 (200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억제 법리의 문제점 고찰: 방영금지가처분 결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2002년 통권 제16-3호, pp. 364-396.
- 51) 서울지법 2002.2.14. 2002가합254.
- 52) 서울지법 2003.5.10. 2003가합1156.
- 53) 서울지법 1998.7.16. 98가합3552.
- 54) 서울지법 1999.2.20. 98가합4070.
- 55) Near v. Minnesota, 283 U.S. 691(1931); United States v. New York Times, 403 U.S. 713 (1971).
- 56) 그러나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57) 헌법재판소 1991. 9. 16자 결정 (89헌마165).
- 58) 대법원 1996. 12. 23자 판결 (95다37278).
- 59) 대법원 1997. 10. 28. 97다28803.
- 60) 양경승, “언론중재제도의 법제사적 의미,”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p. 6-16.
- 61) 김창룡, “언론에 비친 언론중재제도 20년,” <언론중재>, 2001년 봄호, p. 21.
- 62)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제도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1996년, p. 51.
- 63) 참조, 박운희, “독일의 반론권 (상)” <언론중재>, 1995년 여름호, pp. 40-57; “독일의 반론권 (하)” <언론중재>, 1995년 가을호, pp. 50-59; 성낙인, “반론제도 청구권에 관한 비교연구,” <언론중재>, 2002년 여름호, pp. 4-21.
- 64) 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S. 241. (1974)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양 삼 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

I. 개정안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1. 우리나라 언론중재제도의 도입은 1980. 12. 31. 언론기본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위법에서 표현은 비록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옷을 빌려 입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론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로써 우리나라 언론법제에 새로운 시대가 개시되었다.

이후 언론중재제도는 그 출생의 과정에 의심을 받아,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나, 순수한 뜻을 가진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기초를 탄탄히 다져왔다. 그러던 중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언론기본법 자체는 폐지되었으나, 언론중재제도 및 그 근간인 반론권 제도는 살아남아 1987. 11. 28. 정간법의 일부로 흡수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10년 동안은 실무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의 결과로 실질적인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국민들에게 반론권 내지는 언론중재의 개념이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장기간의 노력의 결과는 1996. 7. 1.의 법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가장 큰 결실은 “반론보도”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법률용어로 채택되어 그 몸에 맞는 옷을 비로소 입게 되었으며, 정정보도청구에 대하여도 선택적으로 중재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직권중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재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였다.

이 개정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 모든 조직이나 제도의 성장·진화하는 과정이 그러하듯이, 우리나라 언론중재의 역사도 이제 20년을 훨씬 넘어 성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이나 연구성과에 비추어 좀더 나은 제도를 위한 생각이나 바람이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재위원회는 2000년에 그동안 축적되어온 지혜와 경험을 모아 가칭 “언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입법론적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발표회를 가진바 있고, 그 결론으로서 “언론피해구제법”(안)을 만들어 발표한 바가 있었다.

3. 그러나, 위 가안이 입법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못하던 중 국회에서 2002. 2. 8. 국회의원 27인(대표발의 심재권 의원)의 발의로 정간법 개정법률안이 마련되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2003. 5. 29.에는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까지 개최되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정식의 개정법률안이 마련된 이상, 이제는 이 개정안을 현행의 정간법과 서로 비교·고찰해 봄으로써, 각 조항이 가지는 의미와 취지를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개선점 내지는 보완책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것이다.

II. 개정안 내용의 개관(규정형식 개관)

1. 이번 정간법 개정안은, 현행 정간법의 전반에 걸쳐서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정간법의 2개의 큰 구성 요소 중, 언론침해에 대한 구제(4장) 부분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언론사의 독점금지나 편집권의 독립등)에 대하여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2. 개정안의 내용은 “침해에 대한 구제”부분에 관한 한 그동안 20여 년 간의 실무경험과 학자·실무가들의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그 규정형식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보아 훌륭한 구성을 하고 있다.

이를 개괄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적용대상에 관한 규정(제2조)

개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부분에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온라인신문”에 대한 규정을 삽입함으로써, 온라인신문도 적용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였다(9호). 이로써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고,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그 외에도 정기간행물사업자(12호), 독자(17호)의 개념을 규정하여 그 동안의 불명확함을 제거하였다.

나.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 전반에 관한 규정(제25조~제27조)

종래 언론침해의 민사법적 구제방법으로서 논의되어온 3가지 방법 즉,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정보보도청구권 모두를 수용하는 총괄적인 규정을 두어, 종전의 학자들 및 실무가들의 주장을 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각각의 권리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논리적·시간적 순서에 따라 종전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읽기 쉽고, 찾기 쉽게 정리하였다.

다. 중재의 주체(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제28조~제30조)

중재의 주체인 언론중재위원회(제28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그 구성, 조직, 기능,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종전에는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일부 법으로 정리하였으며, 중재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 것이 특징적이다.

추가적으로, 중재부(제29조) 및 사무처(제30조)에 대한 규정도 두어 체제를 통일하였다.

라. 중재의 절차에 관한 규정(제31조~제42조)

중재의 신청(제31조)으로부터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절차를 진행(제32조)하고, 증거조사(제33조)를 하고, 사건에 대한 결정(제43조, 제35조, 제36조)을 하며, 나아가 사건이 법원에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 제기(제37조, 제38, 제39조), 심리(제40조), 집행(제41조) 및 가처분(제42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규정하였다.

종전에 산만하게 여기저기 나누어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법 이외에 규칙 등 다른 곳에서 규정된 것들도 종합·정리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파악될 수 있게 하였다.

마. 기타에 관한 규정(제43조~제46조)

기타의 부수적인 사항으로서, 종래 1개 조문의 일부로서만 지극히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던 시정권고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제43조), 나아가 종전

에 규정되어 있던 추후보도청구권(제44조)을 정리하고, 중재위원회 활동을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제45조) 및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제46조)을 두었다.

Ⅲ.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규정내용 개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그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먼저 초중량급에 해당되는 것은 단연 “온라인신문”도 역시 정식의 언론기관(정간물)으로서 인정받아, 정간법의 적용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언론환경의 변화가 법률에 수용되게 되었으며, 중재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2. 다음으로, 중(重)량급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위법한 언론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제25조)과 ②정정보도청구사건에 대하여도 반론보도청구사건과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를 거쳐야만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 것(제37조①) 및 ③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 한 것(제28조④)이다.

3. 다음, 중(中)량급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①정정보도청구권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불법행위 성립의 주관적 요건인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일반의 불법행위가 아닌 특수한 불법행위의 한가지 유형으로 규정하였으며(제27조②), ②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 것(제38조②)이 있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에서 숫자가 나오는 부분을 재검토하여 대체적으로 이를 늘이거나, 연장함으로써, 주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한 점을 들 수 있다.

즉, 숫자가 변경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재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하고(제28조②), (현행은 40인 이상 80인 이내)
- ② 중재위원 중 5분의 1이상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위촉하고(제28조②), (현행은 규정이 없으나, 실무관행상 고려)
- ③ 중재부의 의사결정은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제29조③), (현행은 5분의 3이상 출석과 출석 3분의 2의 찬성 : 시행령 제27조①)
- ④ 중재위원회에서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월로 하고(제31조①), (현행은 안 날로부터 1월, 있는 날로부터 6월)
- ⑤ 중재기간에 대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하고(제32조②), (현행은 14일 이내)
- ⑥ 법원에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불성립, 각하·기각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제38조①), (현행은 불성립·이의신청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 ⑦ 법원에서의 심리기간에 관하여, 제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제40조③), (현행은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제4조에 따라 심판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월 이내)
- ⑧ 추후보도청구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무죄 등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게재청구

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44조①), (현행은 1월 이내)

⑨ 시정권고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 시정권고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였다.(제43조④), (현행법률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음)

다만, 앞서본 숫자에 관한 규정들이 모두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보다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유일하게 이와 반대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즉, 중재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하지 못하여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있는 경우(제32조③)에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재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제32조④), (현행법은, 그 신청기한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4.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나머지의 규정들은 일단 경량급에 해당된다 할 수 있는데, 이 규정들은 대체적으로 종래, 대통령령이나, 대법원규칙, 중재위원회사무처리규칙, 또는 법원의 판례나 실무상의 관행에 따라 행해져오던 것들을 정리하여 규정으로 옮긴 것들이다.

IV. 개정안의 검토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아래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그 규정의 순서에 따라 좀더 상세하게 검토해보기로 한다.

1. 적용대상에 관하여

가. 정간법 개정안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 그 적용대상인 언론매체에 관하여, “정기간행물”의 개념을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되는 “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이라고 규정하고(제1호), 그 후, 통신을 일반통신과 특수통신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제7호, 제8호), 제9호에서 “온라인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소위 “온라인신문”의 개념을 정식으로 법전상의 용어로 격상시켜 규정하고, 이 역시 정간법의 적용대상 즉 정정·반론보도 등의 청구 대상이 됨을 명백히 하였다.

이번 정간법의 개정안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만을 고른다면, 단연 이 규정, 즉 “온라인신문”에도 정간법이 적용되게 된 것을 고르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 규정의 신설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즉 종래 과학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 있어서 의사소통 내지는 여론형성의 과정이 크게 변화되었다. 종래 여론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인쇄매체 즉 “오프라인”의 역할이 감소 추세에 있게 되고, 이 역할을 전자매체 즉 “온라인”의 역할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게 된 것이다.

사회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정간법은 그 적용대상을 인쇄매체에 국한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허점을 들어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온라인”매체의 특성 즉 “쌍방향성”을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의 주장을 발표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현행대로 정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견해는 명문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본 개정안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평가]

필자는 종래 개인적인 견해로서, 정간법의 적용대상에, 명문으로 온라인 신문을 규정해 넣지 않더라도, 적어도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당연히 온라인 신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즉 정간법의 대상으로 규정을 두는 것은 등록이나 기타 제제 등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데 필요한 것임에 지나지 않고, 언론피해로 인한 세 가지의 민사적인 구제방법 중에서 최소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정보도청구권은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정간법에 다시 규정해 준 것이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간법에 온라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언론피해로 인한 구제 방법이 인정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하여도, 이 권리의 성질을 정간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된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민법에 규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배상의 특수한 한 가지의 경우로 보거나, 또는 백보 양보하여 창설적인 규정으로 보더라도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넓혀서, 인쇄매체로부터 전자매체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은 법 논리상 무리한 해석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법리적인 논쟁이야 여하튼간에, 이제 이러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사회의 변화에 순응한 법률의 진보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아쉬운 점은 “온라인신문”에 관한 개정안의 규정으로서는 제2조 9호에서 그 의미내용을 정의한 것이 유일한 것이자 전부이다. 필시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이 됨으로써 앞으로의 실무상 현재는 예상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아직 온라인 신문의 틀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만큼, 상세한 규정을 두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규정들은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검토 과제일 것이다.

나. 정간법 개정안은,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정간법상의 피해구제의 상대방으로서, 현행법상으로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언론사)”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모두 “정기간행물사업자”라고 바꾸어 규정하고(제25조, 제26조①, 제27조①), 제2조 제12호에서 그 용어의 정의를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여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간법의 전신인 언론기본법에서는 정간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1995. 12. 30. 법개정 시 현행법과 같이 개정되었고 개정안은 이를 다시 손질한 것이다.

[평가]

이 규정은 최초 언론기본법상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규정이 우리 법이 모범으로 삼은 독일의 언론법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옮겨 놓았던 것이었는데,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진화를 거듭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다.

개정안의 태도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 규정을 보면서 23년 전 언론기본법이 생기고,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원회가 기능을 시작한 이래, 우리의

몸에 맞는 옷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일말의 감회를 느끼게 한다.

2. 언론침해로 인한 구제방법에 관하여

개정안은 현행법체계상 언론침해로 인한 민사법적인 구제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3가지의 권리 즉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이를 구제방법으로 규정하였고 따라서 위 3가지 모두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손해배상청구권

개정안은 제25조에서 “정간물사업자”가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일반규정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규정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언론침해의 경우에 특화하여 특별히 따로 주의적으로 친절하게 규정해 준 것으로써, 그 자체로써 법률상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커다란 의미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즉, 개정안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하였고, 나아가 개정안 제3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데에 있는 것이다.

이를 현행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면,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원에의 제소를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손해배상청구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그 침해원인과 피해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이 간단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범위 즉 손해배상액의 산정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률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리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나아가 철저한 증거조사의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현재에 있어서 크게 변화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중재위원회가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해온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손해배상의 문제까지도 다루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위원회가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한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역시 앞서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필요적” 중재 대상으로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중재 대상으로만 인정하였다. 즉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중재위원회를 거쳐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평가]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나아가 중재의 대상으로 할 경우에 이를 법원에의 제소를 위한 필요적인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환경 및 중재위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 여하에 따라 결정될 순수히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점에 관하여 개정안은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손해배상까지도 중재의 대상으로 하되 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한발 짝 물러난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일응 합리적이고 타당한 자세라고 여겨진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은, 손해배상의 청구가 앞서 본바와 같은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중재위원회에서 이를 심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원인 즉 인과관계와 손해의 범위 즉 배상의 액수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심리의 대상으로 하여 중재에 임할 것이 요구된다.

자칫 그렇지 아니한 경우까지도, 의혹이 지나쳐서 중재를 성립시키려고 노력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반론보도나 정정보도의 문제의 해결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반론보도청구권

개정안은 그 제26조에서 ①항부터 ⑪항에 걸쳐서,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알기 쉽게 현행법의 규정들을 종합·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현행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과, 다른 하나는 개정안의 형식은 신설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종래 판례나 학설 또는 실무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오던 것을 정리하여 조문화시킨 것들이 있다.

먼저 전자의 것으로는 제3항의 청구기간에 관한 것이다.

즉 현행법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것을 “3월 이내”로 확장하였다. 이는 물론 권리자가 비합리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을 제약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후자의 것으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① 반론보도의 상대방을 “정기간행물사업자”로 규정(제1항)함으로써, 우리의 언론현실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이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② 제2항에서는 반론보도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불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순수히 법 논리적인 주의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반론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의 성질상, 피해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인 만큼 당연히 여기에는 언론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보도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반론보도가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종래 판례와 학설이 일치되어 인정한 것을 일반인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명백히 해준 것이다.

③ 제4항에서는, 당사자 적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종래의 학설이 인정하고 판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을 규정화 한 것이다.

④ 제7항 단서에서는, 반론보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9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이미 편집·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발행호에 게재하도록”하였다. 이 역시 종래의 통설적 견해다.

⑤ 제8항에서는, 반론보도의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 반론의 취지를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기사의 크기, 위치, 형식 등이 동일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질적” 형평을 이루도록 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현행법 제16조 제5항은 “반론보도의 자수는 이의의 대상인 공표내용의 자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글자수”를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결정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행법의 입법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바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행정부 검토과정에서 이와 같이 이상한 조문으로 되어 버렸으나, 법원의 판례상으로도 이러한 규정의 잘못은 인식되어 실질적으로는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⑥ 제9항에서는 반론보도의 형식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야한다” 규정하여, 반론보도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당연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계몽적인 의미와 더불어, 언론기본법 시행초기, 반론권의 개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의 필요 없는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조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⑦ 개정안은 제11항에서, 반론보도의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중의 대부분은 현행법의 여기저기에 산재하여 규정된 것을 한군데로 모아 정리하였고, 일부는 종래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이론을 조문화하였다.

즉 후자의 예로서는 제1호에서 “후속보도에 의하여 충분한 반론이 이루어진 경우”를 들고, 제4호에서 “광고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평가]

반론보도의 청구기간에 대하여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을 “3월”로 바꾼 것에 대하여는, 정답이 있을 수 없고, 견해에 따라 각자 다른 숫자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기간이 너무 짧으면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로 될 것이고, 반대로 기간이 너무 길면, 언론기관을 너무 장시간 동안 불안정한 위치에 두는 결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우리나라 언론현실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나, 최소한 일간지의 경우에는 개정안의 3월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든다.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종래의 판례·이론을 정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 정정보도청구권

① 현행법의 규정 하에서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 것이 없고, 다만 제18조 제1항에서, 중재신청의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제27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즉 제1항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둔 다음, 제2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의 요건으로서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 정정보도청구권의 법률적 성질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즉, 중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법중의 하나로서 금전배상이 원칙이지만, 이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로서 특별한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구제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정정보도 역시 민법상 불법행위의 권리구제수단인 이상, 그 보도에 고의·과실의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언론보도에 관련하여 고의·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나, 또는 최소한 고의·과실은 이를 추정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명문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로써 정정보도청구권을 민법의 규정보다는 훨씬 완화된, 특별한 종류의 권리로서 그 위치를 자리매김해 준 것이다.

③ 다음으로 제3항에서는, 정정보도의 형식에 관하여, 이는 “독자투고의 형식이나 피해자의 진술형식”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주의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사유를 반론보도의 경우와 대비하여 상세히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예로서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특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고서도(이는 독일에서의 판례에 의하면, 인증 즉 “증인이 아닌 서면만의 심사에 의하더라도”라는 의미라고 한다)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개정안 제26조 제11항 2호),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만 되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반론보도청구권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간과되기 쉬운 점으로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개정안의 내용들은 종전의 판례·이론을 수용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그러나, 막상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은 정정보도의 청구 역시 반론보도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한 데에 있다(개정안 제37조 제1항).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행법에 있어서는, 반론보도청구에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면서, 정정보도에 대하여는 “임의적”, “선택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점 역시,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현재 선택적으로만 중재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정정보도청구사건의 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이제는 정정보도청구 사건까지도 필요적 중재대상으로 하는 데에 하등의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고, 오히려 언론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안의 이점에 대한 태도는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3. 중재의 주체에 관하여

개정안은 중재의 주체를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그리고 사무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가. 먼저 개정안 제28조는 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기본적으로는 현행법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음의 3가지 점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즉,

- ① 중재위원의 수를 현행 40인 이상 80인 이내에서, 60인 이상 110인 이내로 늘리고(제2항 전단)
- ② 중재위원의 5분의 1 이상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하도록 하며(제2항 후단)
- ③ 중재위원장은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하도록(제4항) 한 것이다.

나. 다음 개정안 제29조는 중재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현행법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제3항은 중재부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현행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5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완화하여, 법률로 격상시켜 규정하였다.

다. 끝으로 개정안은 제30조에서, 사무처에 관한 중전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것들을 정리하여 법률로 규정하였다.

[평가]

중재위원의 수를 늘린 것은 사건의 증가로 인한 중재부 증설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여겨진다. 중재위원의 일부를 시민·사회 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은 현재 실무상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서 별 문제는 없다.

위원장의 “상임”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들(정치적 고려, 예산상의 문제, 유사기관과의 위상 문제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것이지만, 앞서본 바와 같이 여러 면에서 (정정보도까지 필요적 중재대상이 되고 손해배상청구도 임의적 중재대상이 된 점 등) 중재위원회의 위상이 격상된 만큼, 위원장의 상임화는 필수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중재부의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현재의 시행령에의 규정은 그 형식이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중재부장에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정할 수 없는 불합리가 생기고, 또한 5분의 3이상 출석은 그런대로 수긍할만 하나 (이는 실제로 5인의 중재부인 경우에는 과반수의 출석과 결과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나),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은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너무나도 크게 어긋난다. 즉 5인의 위원이 모두 참석한 경우에는 4인의 찬성이 필요하고, 4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3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3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2인의 찬성이 필요하며, 결국에는 반대자로서는 어느 경우에도 1인의 여유밖에는 없는 셈이다.

4.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이는 다시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및 법원에서의 절차로 나누어진다.

가. 중재위원회에서의 절차

개정안은 이 부분을 다시 중재신청(제31조), 중재절차(제32조), 증거조사(제33조), 중재결정 등(제34조, 제35조, 제36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 ① 중재신청기간을 현행 안 날로부터 “1월”에서 “3월”로 늘려서 규정하였다. 이점에 대하여

는 앞에서 이미 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생략한다.

② 중재절차의 종료는 현행 14일(단, 직권중재결정의 경우는 21일)에서 21일로 늘려 규정하였다. 현재의 14일은 너무 촉박하여, 중재실무상 피신청인이 1회 불출석하여 1주일 후에 2회 기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실제상 1회밖에 중재기일을 열 수 없는 불합리를 감안한 것이다.

③ 중재의 당사자가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그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면 “기한제한 없이 언제든지” 중재절차의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상의 허점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 속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규정들은 모두, 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한 기본규정인 민사소송법의 규정 중에서 중재절차에 필요한 규정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것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평가]

중재신청기간을 안 날로부터 3월로 연장한 것은 언론 현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이나, 적어도 일간 신문의 경우에는 약간 문제로 될 수 있음을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나. 법원에서의 절차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다시 소의 제기와 관련된 부분(제37조, 제38조, 제39조), 심리와 관련된 부분(제40조), 집행에 관한 부분(제41조), 가처분에 관한 부분(제42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법원에서의 제소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필요적 전치요건으로 하였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이를 임의적 전치요건으로 하였다(제37조 제1항).

이는 개정안의 핵심적 개정 내용중의 하나인바,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② 법원에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현행법은 불성립된 것을 안 날로부터 (또는 이의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를 제기토록 한 것을 “30일”로 연장하여 규정하였다.

③ 소위 중재부의 직권중재결정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제18조 제7항 단서)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밖에 없어, 이중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그리하여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소 절차가 필요 없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인지 첨부 등 최소한의 절차만을 거쳐 바로 법원에서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제38조 2항).

④ 법원에서의 심리 방법에 관하여 현행법은,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여 소송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 관행에 의하면, 가처분 절차에 의하더라도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절차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함께 제소된 경우 전자는 본안, 후자는 가처분 절차가 적용되는 등 오히려 불편한 경우마저도 생기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리하여, 개정안은 이 현실을 직시하여 차라리, 모두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되, 가처분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인 “증명”이 아닌 “소명”만으로도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으로 소송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제40조 제2항).

그리고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의 소가 “병합”된 경우에 소송의 신속을 위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일부만의 판결을 할 수도 있으며(제40조 제3항), 인용판결의 선고 시에도, 반론보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보도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집행 선고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⑤ 또한,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판결의 집행은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한 것을 명문화하여, 종래의 이론 및 판례를 그대로 수용하였다(제41조 제1항).

⑥ 개정안 제42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치분을 언론침해의 경우로 특화하여 따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평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언론사건의 특수성에 기하여 가능한 한 절차를 신속·간이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나머지 규정들은 종래 법률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하여 의문이 있던 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학설의 내용을 조문화한 것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기타의 조항들에 관하여

위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망라해 보았는바, 개정안은 마지막 4개의 조문들을 시정권고, 추후보도청구권, 중재위원회 활동의 국회에의 보고 및 보조금에 관한 것으로 할당하고 있다. 즉,

가. 개정안 제43조는, 현행법 제18조 제8항에서 지극히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경우(제1항), 시정권고의 기준(제2항),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의 청구(제4항), 및 재심의 절차(제5항)와 재심인용의 경우의 조치(제6항), 시정권고의 효력(제7항) 및 외부공표(제8항)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종래의 미비점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을 법률로 보완하였다.

나. 또한 개정안 제44조는 현행의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정리하였으나 다만 그 청구기간을 현행 1월에서 3월로 연장하였다(제1항).

다. 그리고, 개정안 제45조는, 현재에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매년 이루어져온, 국회에 대한 보고 및 출석·의견진술의 현실을 법규정에 옮겨 규정하였다.

라. 끝으로 개정안 제46조는 현행과 같은 보조금 규정을 존치시켰다.

[평가]

위 규정들은 모두 현재 명문의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합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문화 한 것으로 별문제는 없으며, 추후보도 청구기간을 3월로 늘인 것도 역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려는 개정안의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되는 것이다.

V.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 평가 및 개선점

1. 종합적 평가

지금까지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신문도 포함시키고,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중재의

대상에 포함시킨 이번의 정간법 개정안은 중재위원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서 이제는 언론에 의한 권익침해사건에 관한 한 중재위원회로 하여금 “종합병원”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3년 전 중재위원회가 처음 발족할 당시 그 중재대상은 “반론권”에 한정되어 있었고, 그것도 “반론권”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못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이라는 용어를 빌려 사용하던 시절을 돌이켜 보면, 문자 그대로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하여 요즈음 논의되고 있는 “언론피해구제센터”까지도 중재위원회에 설치되게 되면, 언론피해구제절차에 관하여 “one stop service”까지도 제공하는 기구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가. 개정안을 그 규정의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크게 잘못된 점이, 빠진 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현재의 상황 하에서는 최선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래 현행법의 규정 및 중재위원회의 실무과정을 상세히 검토하고 연구한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견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대폭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는, 위와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내부적으로는 중재위원회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열성적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는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 다만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나 실무경험의 미숙적 등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전히 호전되고 실무경험이 축적된다면 내용상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이 두 가지 보여진다.

하나는 앞서 본 중재위원회의 위상의 격상에 발맞추어 중재위원의 위촉을 문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시켰으면 하는 점이고,

둘째는 온라인 신문이 중재의 대상으로 됨에 따라 실무상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리하여 이에 관한 규정들을 설치·보완하는 문제이다.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개정안의 내용에 비하여 형식의 면에 있어서는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눈에 띈다.

가. 첫째는, 단연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은 자명하다.

① 현재는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그 언론매체에 따라 따로 정간법과 방송법에 나누어 이중으로 규정되어 있다.

② 지금 마련되어 있는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안에 이미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정의 형식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체제상 약간의 수정만을 가하면 바로 훌륭한 단일법으로 완성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도를 충분히 구비하고 있다.

③ 현행의 정간법의 규정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즉 “정간물의 소유의 독점의 금지와 편집의 독립”에 관한 규정(2장 및 3장)과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규정(4장)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런데, 후자에 대하여는 크게 정치색이 없고 규정의 합리성만이 주로 문제되는데 반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크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후자의 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막상 전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후자의 개정마저도 성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따라서 양자의 분리가 필요하고도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단일법의 제정이 요망된다. 그 명칭으로는 “언론피해구제법” 또는 “언론중재위원회법”등이 거론되고 있었다.

나. 둘째는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즉,

① 개정안은 제2조에서 “온라인신문”의 개념을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1호에서 “정기간행물”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신문의 개념을 규정하고 제7호와 제8호에서 통신의 개념을 규정한 다음에 규정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이어서 제10호에는 잡지의 규정으로 넘어가는 순서에 비추어서 적절치 않은 느낌이 든다.

즉 개정안이 “온라인 신문”도 신문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그 규정의 위치도 “통신의 다음”이 아니라 “신문의 다음” 즉 제9호가 아니라 제7호로서 규정하였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② 다음으로 개정안은 언론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세 가지를 손해배상청구권(제25조), 반론보도청구권(제26조), 정정보도청구권(제27조)의 순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아 중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래적인 임무는 반론보도청구의 심리에 있었고, 또한 반론보도만이 필요적 중재의 대상인 만큼 이를 맨 처음에 규정하고, 이어서 정정보도청구를 규정한 다음(여기에는 반론보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할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는 중재위원회의 임의적 중재의 대상임에 불과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③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가 중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라는 내용을 규정하는 형식 및 그 위치에 관해서이다.

현재의 개정안은 이를 제31조(중재신청)의 조항에서 규정하면서 ①항에 “피해자는 … 손해배상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또는 정정보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 3월 이내에 …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의 전체 체계상으로 보면, 제31조의 중재신청의 조항에는 그 신청기간을 규정함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어떠한 권리인지에 관한 규정은, “중재위원회의 임무 내지는 위상”을 선언적으로 최초로 규정하는 조항인 제28조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28조 제1항을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VI. 맺는말

이번의 정간법 개정안은 현재까지의 학설의 발전, 실무의 경험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의견이면 이를 가능한 모두 수용한 아주 모범적인 개정안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적인 바와 같이 약간의 사소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지만, 이를 수정·보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다 합리적인 언론중재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